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소관기관 및 부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국

2.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2월 16일, 조용진 의원 외 13명

나. 회부일자: 2024년 2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34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2월 27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의결)

3.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설명자: 조용진 의원

나. 제안이유

○ 경북 관내 각급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책무(안 제3조)

○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학교 먹는물 공급 사업 등(안 제5조)
- 학교의 먹는물 관리(안 제6조)
- 정수기 설치 및 점검(안 제7조)
-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4.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이경형)

가. 제안취지

-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안 제1조는 경상북도교육청 관할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과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정의와 교육감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
-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관리계획, 먹는물 공급 사업, 학교의 먹는물 관리, 정수기 설치 및 점검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

다. 종합의견

- 코로나19와 환경오염 등으로 갈수록 깨끗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안전한 먹거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는 물임.

- 경상북도교육청은 먹는물 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노후 수도관 개선, 배관성능향상장치 도입, 급수관 세척 등 시설개선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학교 먹는물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학교의 먹는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적절한 입법 조치라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 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